

V.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예금보험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화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제도로서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국내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는 금융권역별 보증기금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 왔으나 1998년 4월부터는 은행예금자들을 보호하던 예금보험기금에 통합되어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지원 및 정리 그리고 보험금 지급 등을 일괄적으로 관장해오고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금융산업이 재편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고 이로 인한 대규모 공적자금이 각 권역에 투입되었다. 예금보험은 이러한 금융 위기시에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서 이 기간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수습되고 금융산업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제도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과 불협화음이 산업 내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예금자보호기금이 통합된 이후 획일적인 예금보험료 체계는 금융업종간의 특징이 무시되고 은행 위주 정책의 결과로 인하여 타 권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업종간 예금보험료 체계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권역 간에 공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예금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분석을 통하여 논란의 근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 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고정보험요율 제도에 대한 발전적 대안인 차등보험요율 제도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예금보험기금의 보장한도와 재원조달 방식 그리고 기금의 권역간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단기적·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분석·제시하였다.

권역간 현행 예금요율 산정방식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특정 권역의

부가 타 권역에 이전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고, 은행권과 보험권의 비교분석을 통해 은행의 현행요율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은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미 9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실제 사례 분석과 1999년부터 차등요율제 도입을 검토해온 예금보험공사의 분석 등을 통해 자본건전성과 경영실태평가에 연계한 등급별 차등보험요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금의 보장한도는 현행대로 부분보장제를 유지하는 것이 예금자/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으며, 업종별·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 보상한도 설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영국과 독일의 보상체계를 본받아 90퍼센트 공동보험(co-insurance) 도입을 통하여 명실공히 예금자/계약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선택시 책임감을 갖고 금융거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금의 재원은 사전적립 방식에 의하여 축적이 되고 있으나 안정기의 금융산업에 정해진 목표 적립수준도 없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의 취약점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표기금제를 검토하고 국내 도입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도는 목표수준에 기금적립이 도달되면 금융기관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목표수준보다 낮아지거나 추가적인 파산사례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보험료 납부가 요구되는 탄력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금 내에 권역별로 구분하여 계리하게 되어있는 현행 운영방식은 권역별 파산기금의 방화벽 역할을 하기에는 취약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금을 분리계정화 하고, 상품간의 위험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계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생명보험계정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으로, 손해보험계정은 자동차보험·일반보험·장기손해보험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단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기금을 기존의 통합된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해 주는지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산보증제도로서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범위를 보험부문을 위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제II I장의 실증분석을 통한 금융권역간 부의 이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은행과 보험회사 데이터에 국한하였고, 그로 인하여 권역 간의 부의 이전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증권회사, 종금사, 신탁, 저축은행의 공적자금 데이터와 예금보험료 데이터 등이 추가된다면 그러한 현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를 통하여 그러한 아쉬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실증분석에 종종 수반되는 문제는 데이터의 정확성 외에 대리성(proxy) 문제가 있다. 제III장 2절의 금융권역간 부의 이전을 분석 하는데 사용된 통계는 예금보험의 순수한 보험금과 보험료가 되어야 하나, 제도 시행의 기간이 짧고 기간중 발생한 금융기관의 과산비용은 대부분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금융권역별 적정보험료 산출 등에 사용된 보험금 통계는 투입된 공적자금 통계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본문 상에 이미 언급하였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분석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외에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중에 부분보장제의 업종별 차등보상과 공동보험을 제시하였으나, 이론적인 근거만을 제시하고 실제 경제적 편익과 같은 증거가 취약한 점을 밝히며, 목표기금제 도입에 대한 운영방안도 구체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개선책을 바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후속연구가 이러한 한계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시된 각각의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보완된 실행 방안을 제시하게 될 수 있기 바란다.